

제26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

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19. 4. 18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19년 4월 18일

전문위원 정 우 숙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2019 - 13
- 나. 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19년 4월 11일
- 라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16일

2. 제안이유

서부수도권에 위치한 10개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공동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규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2018. 10. 10.자로 상기 협의회에서 탈퇴함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 개정 (규약 제3조)
- 나.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단체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(규약 제1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, 제154조, 제158조

나. 현행규약 1부

5. 검토의견

- 본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(행정협의회 구성) 및 같은 법 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,
 - ‘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’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여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1993년 9월 25일 구성되었으며,
 - 현재, 협의회는 서울시 강서구, 양천구, 구로구와 경기도 부천시, 광명시, 시흥시, 김포시, 인천시 계양구, 서구, 강화군의 10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고, 우리구는 2000년 12월 5일 가입하였음
-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 - 규약 안 제3조에서는, 인천시 부평구가 2018년 10월 10일 자로 상기 협의회에서 탈퇴함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을 개정하였고,
 - 규약 안 제17조에서는,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단체 세입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,

- 인천시 부평구 탈퇴에 따른 협의회 구성단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,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목적 외 사용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바, 본 규약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□ 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의회의 명칭
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5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6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